



# 2023년 12월 정기회의 자료



- 일시 : 2023. 12. 19.(화) 18:30
- 장소 : 엘지베스트샵 불광점 2층
- 참석 : 주민자치위원 48명



**불광1동 주민자치회**

# 진행순서

1. 개 회

2. 인사 말씀

3. 구. 동정 공지사항

I. 보고사항

- 1) 주민자치회 보조금 운영내역
- 2)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사업비 운영내역
- 3) 자치회관 수강료·사용료 운영내역
- 4) 주민자치회 회비 운영내역
- 5) 분과별 운영 및 사업현황
- 6)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
- 7) 사무국 구성현황

II. 심의 안건

- 1) 운영세칙 부분개정의 건
- 2) 분과구성 확정건의 건

III. 안내 사항

- 1) 회의 및 사업 일정

4. 폐 회

# 구·동정 공지사항

## 1 2024년 불광1동 업무보고회 개최 안내

- 장 소 : 불광1동 주민센터 다목적실(예정)
- 일 시 : 2023. 1. 25.(목) 10:00 ~ 11:30
- 내 용
  - 1부 : 식전공연, 국민의례, 내빈소개, 표창수여, 업무보고
  - 2부 : 주민 소통·공감 마당, 건의사항 청취·답변 등

## 2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(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)

- 국세청 홈택스 「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」 개통(10. 31.시행)

### [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?]

-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
- 신용카드·기부금·연금저축·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·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 제공

- '23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,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
  - ☞ 고향사랑기부 활용 세액 절감 홍보(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)
  - ☞ 기부 시 기부금액 30% 상당 답례품 제공(은평사랑상품권 등)
- 주소지가 '은평구' 인 경우 상호기부 매칭 가능
  - ※ 동 담당자에게 상호기부 매칭 요청(☎ 351-5032)
- 참고사항 : 기부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

(단위:원)

| 기부한 금액    | 세액공제*   | 답례품(30%)  | 받는 혜택 총액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00,000   | 100,000 | 30,000    | 130,000   |
| 500,000   | 166,000 | 150,000   | 316,000   |
| 1,000,000 | 248,500 | 300,000   | 548,500   |
| 5,000,000 | 908,500 | 1,500,000 | 2,408,500 |

\* (공제비율)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분 16.5% 공제  
(공제대상) 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

### 3

##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(제한, 금지 사항)

### ○ 상시제한

- **선거운동 제한** : 주민자치(위원)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

공직선거법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(생략)

7. 통·리·반의 장 및 읍·면·동주민자치센터(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·면·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을 총칭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된 **주민자치위원회**(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·면·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**위원**

- **선거관계 금지** : 주민자치(위원)회 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공직선거법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① (생략) **주민자치위원회위원**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○ 90일 제한('24. 1. 11.(목) ~ 4. 10.(수))

- **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 등 제한**

▶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(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자, 토론자,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 등)가 되고자 할 때 **선거일 전 90일('24년 1월 11일)까지 사퇴**해야 함

▶ **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는 경우 사퇴의 의무는 없으나, 가급적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동안은 분과원 활동을 자제**

### ○ 60일 제한('24. 2. 10.(토) ~ 4. 10.(수))

- **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** :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공직선거법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)은 선거일전 60일(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4.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**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,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**

▶ **주민자치학교 운영(오프라인 교육)은 불가능하며, 분과원 모집은 사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등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 범위내에서 가능**

### ○ 선거기간 중 제한('24. 3. 28.(목) ~ 4. 10.(수))

- 주민자치회의 회의 등 금지 : 각종 집회 등의 제한

[붙임]

##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

### 1.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

가. 관계법조 :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(공무원등의 입후보)제1항·제2항

나. 사직기한 : 2024. 1. 11.(목)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

※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.

다. 사직대상 :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

- 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에 규정된 지방공무원

※ 단, 「정당법」 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(정무직공무원 제외)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.

- 2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

- 3)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

- 4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(한국은행을 포함함)의 상근 임원

※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www.alio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.

-> 알리오 접속 ⇨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⇨ '정기공시' 클릭 ⇨ '자본금 및 주주현황' 클릭 ⇨ 정부 지분 확인

- 5) 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·「산림조합법」·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

- 6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범위)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

- 7) 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

- 8)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,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, 「방송법」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·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·제작·취재·집필·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

- 9)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, 시·도조직 및 구·시·군조직을 포함함)의 대표자

라. 예 외

- 1) 선거일전 120일[2023. 12. 12.(화)]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
: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- 2) 선거일전 30일[2024. 3. 11.(월)]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
: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(공무원등의 입후보)제1항의 공무원 등
- 2)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: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

2.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

가. 관련법조 :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제2항

나. 사직기한 : **2024. 1. 11.(목)까지** 선거일 전 90일까지

(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

다. 사직대상

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「공직선거법」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, 투표참관인, 사전투표참관인(이하 “선거사무관계자 등”이라 함)이 되고자 하는 때

- 1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
- 2)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
- 3) 주민자치위원회위원(또는 주민자치회위원)
- 4) 통·반의 장

라. 복직제한 :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

| 기 한         | 대 상  |
|-------------|--|
| 선거일 후 6월 이내 |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<b>통·반의 장</b> 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|
| 선거일까지       | <b>주민자치위원회위원(또는 주민자치회위원)</b>                   |

※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께서서는 반드시 담당 주무관(조혜은)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4 폐의약품 배출 장소 변경 안내

### ○ 배출 장소

| 기존 배출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배출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
| - 폐의약품 수거함(구청, 주민센터, 보건소 등)<br>- 은평구 관내 약국 | - 폐의약품 수거함(구청, 주민센터, 보건소 등)<br>- 은평구 관내 우체통 |

※ 24년 1월부터 약국 내 폐의약품 배출 불가

○ 배출 방법 : 알약을 봉투 안에 넣어서 배출, 물약은 배출 불가

## 5 겨울철 그린 모아모아 휴무 안내

○ 휴무기간 : 2023. 12. 2.(토) ~ 2024. 2. 21.(수)

○ 휴무사유 : 겨울철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자원관리사 안전 도모

○ 재개일자 : 2024. 2. 22.(목) ※ 변동될 수 있음

○ 문 의 :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☎ 02-351-7584

# 1 보고 사항

## 1 주민자치회 보조금 운영내역

□ 주민자치회 보조금(운영비) 집행현황 (11. 30. 기준)

| 교부총액 (a)        |            | 집행액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집행잔액<br>(a)-(b+c)+이자 | 비고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이전 집행(b)   | 11월 집행<br>(c) | 누적 집행<br>(b+c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주민자치회<br>운영·사업비 | 5,000,000  | 3,287,800  | 30,000        | 3,317,800      | 1,687,262            | 이자 4,162 |
| 의제 발굴<br>및 주민총회 | 15,000,000 | 13,028,740 | 0             | 13,028,740     | 1,978,321            | 이자 7,061 |

□ 집행세부내역 [11.1. ~ 11.30.]

| 연번 | 건명            | 지출내역          | 지출총액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 | 주민자치회 운영, 사업비 | 운영진회의 행사실비지원금 | 30,000 |
|    | 합계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30,000 |

## 2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사업비 집행내역

□ 동참여예산 의제사업(사업비) 집행현황 (11. 30. 기준)

| 교부총액 (a)           |            | 집행액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집행잔액<br>(a)-(b+c) | 비고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이전집행(b)    | 11월 집행<br>(c) | 누적 집행<br>(b+c)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정관 내<br>있는 장독대     | 10,000,000 | 7,583,660  | 1,515,870     | 9,099,530      | 790,47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함께해요맘파             | 5,000,000  | 4,425,950  | 0             | 4,425,950      | 574,05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동네아카이브<br>마을재단     | 5,000,000  | 4,696,700  | 250,000       | 4,946,700      | 53,30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거강워킹건강<br>블로그      | 5,000,000  | 3,721,200  | 0             | 3,721,200      | 1,278,8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어린이 안전<br>가방담개     | 19,000,000 | 17,309,000 | 1,691,000     | 19,000,000     | 0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자투리 썬터<br>CCTV 설치  | 15,000,000 | 15,000,000 | 0             | 15,000,000     | 0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무단 투기지역<br>CCTV 설치 | 16,000,000 | 12,000,000 | 0             | 12,000,000     | 4,000,000         | 재개발구역으로<br>해당구역설치불가 |
| 도도정 스키<br>어닝설치     | 10,000,000 | 6,208,400  | 0             | 6,208,400      | 3,791,6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사랑 더하기<br>김장 나누기   | 10,000,000 | -          | 9,274,690     | 9,274,690      | 725,31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취미 잡고<br>환경 잡고     | 5,000,000  | 1,430,000  | 1,989,000     | 3,419,000      | 3,570,0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## 3 자치회관 사용료 · 수강료 운영내역

□ 수강료 수입·지출

(11. 30. 기준)

| 구 분   | 이월액        | 수입액    | 지출액       | 잔 액   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금액(원) | 10,443,109 | 46,754 | 2,477,800 | 8,012,063 |     |

○ 수입 지출 내역

(11. 30. 기준)

| 구 분 | 내 역         | 수입액    | 지출액       | 비 고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합계  |             | 46,754 | 2,477,800 |          |
| 수입  | 수강료         | 46,754 |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| 이자수익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 지출  | 강사료 지급      |        | 2,320,800 |          |
|     | 자원봉사자<br>비용 |        | 112,000   | 박효남, 김영욱 |
|     | 수강료 반환      |        | 34,000    |          |
|     | 운영비         |        | 110000    |          |

### 4 주민자치회 회비 운영내역

□ 회비 수입·지출 (단위: 원)

(11. 30. 기준)

| 이월액       | 수입액    | 지출액     | 잔 액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2,919,183 | 40,000 | 150,000 | 2,809,183 |     |

\*수입 : 박흥열1, 황광연1, 이강해2

\*지출 : 황광연 자녀 결혼축의금10만, 창하된장 차량운행비5만

\*12월 19일기준

-수입 : 정유찬 10만

-지출 : 장독대 및 김장 고기 및 주류 174,000원, 동장님 퇴임식 찬조 40만원, 통친회 송년회 찬조 10만원  
= 총지출 674,000원

회비 총 잔액 : 2,235,183원

## 5 분과위원회 운영 및 사업 현황

| 분과회의 | 마을배움터<br>12월8일                 | 교육문화<br>12월12일                   | 생태 안전<br>12월8일          | 건강복지<br>12월19일 | 지역경제활성화<br>12월7일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내용   | 24년 1월<br>자치회관<br>프로그램<br>진행관련 | 취미잡고<br>환경잡고<br>10회차 및<br>평가회 논의 | 분과재구성 및<br>안전우산<br>나눔관련 | -              | 분과재구성            |

##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

- 24년 1분기 프로그램 접수기간 : 23.12.19.~21.
- 24년 1분기 프로그램 운영기간 : 24.1.~2. (3월 휴관)
- 24년 1분기 프로그램 강좌 : 기존과 동일
- ※ 23년 4분기 프로그램 접수에 한하여서만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합니다.
- ※ 24년부터는 행정에서 프로그램 접수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.
- ※ 단, 조례에 의거 프로그램 강좌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심의합니다.

## 7 사무국 구성현황

- 모집 및 면접 결과

| 모집기관  | 모집분야 | 모집결과 | 면접결과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불광1동  | 사무국장 | 1명   | 한소영 사무국장으로 선정 |
| 주민자치회 | 간사   | 1명   | 조건 미비로 인해 재모집 |

## II 심 의 안 건

### 1 운영세칙 부분개정의 건

- 운영세칙 제18조3항, 제20조8항,9항,10항, 제28조1항, 제33조 및 부칙에 관하여 신설 또는 개정토록 한다.
  - 제18조(분과위원회) 변경
    - ③ 주민자치회위원 (7명→10명)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.
  - 제20조(주민총회) 신설
    - ⑧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, 설명회,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,

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- ⑨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⑩ 주민총회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인원, 업무분장, 역할,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.

- 제28조(자치회관운영) 변경

- ① 자치회관 운영은 (마을배움터 →자치회관) 관련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33조(재정) 변경 및 신설

-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, 교부금, 수익금, 수탁금, 찬조금, 특별회비→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

6.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수입으로, 회비는 매월 10,000원으로 한다. 회비사용처는 규칙 (부칙3)에 따른다.

-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는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지출한다.
-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, 기 납부한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.

☞ 상정안을 개정하도록 각 조당 의결하고자 함

## 2 분과 구성 확정 의 건

□ 2024년1월부터 불광1동 주민자치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은 다음과 같다.

- 1분과 :
- 2분과 :
- 3분과 :
- 4분과 :
- 분과회의는 1월중 개최하며, 분과위원장 및 분과총무를 호선토록 한다.

☞ 상정안을 확정토록 의결하고자 함

### III 안내 사항

#### 1 분과장 및 분과총무 선정

---

- 일시 : 23년12월20일 ~ 24년1월14일 기간 내
- 분과회의시 분과장 및 분과총무 선정, 분과약속 또는 수칙 정하기 등

#### 2 감사일정

---

- 일시 : 1월12일(금) 오후4시30분
- 장소 : 동주민센터 3층 (주민자치회 사무실)

#### 3 1월 운영진 회의

---

- 일시 : 1월15일(월) 오전10시30분
- 장소 : 동주민센터 3층

#### 4 1월 실행팀 구성을 위한 워크숍

---

- 일시 : 1월15일(화) 오후6시
- 장소 : 동주민센터 4층 (다목적실)

#### 5 1월 정기회의

---

- 일시 : 1월15일(화) 오후6시30분
- 장소 : 동주민센터 4층 (다목적실)